

2.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수도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장치의 관리에 관한 주체와 사용량 분석결과 구경 변경시 시설분담금 징수와 환분, 원인자부담의 부과대상, 수도계량기 위치와 구경 결정, 중수도에 사용료 감면 규정, 옥내누수 감면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급수공사 대행업자지정 수수료 인상(안 제10조)
 - 건당 신규 10,000원, 갱신 5,000원
- 수도계량기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한다.(안 제11조 제2항)
- 급수공사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라 산출한 실제공사비로 한다.(안 제12조 제1항)
- 공사비 선납 조항 삭제(안 제 13조)
- 수도법 제53조 및 수도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시가 공공목적으로 하는 수도공사는 제외 할 수 있다.
(안 제14조의2 제1항)
- 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 부과시기, 납부 방법등 필요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안 제14조의2 제2항)

○ 요금등의 감면(안 제40조)

· 중수도의 업종별수도요금감면

(가정·업무·공업용 65%까지, 영업용 30%까지)

· 옥내누수 복구시(지하매설부분) 수도요금 감면은 누수 달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요금의 50% (감면된 요금을 일반회계의 예산에서 재원지원)

□ 검토내용

○ 동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제53조 및 수도법시행령 제35조 규정이 개정(2001. 3. 28)되고 시행일(2001. 1. 9)이 다가옴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제외 대상 등은 조례로 정하고, 부담금의 산출기준, 부과시기, 납부방법등의 필요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또한 중수도 사용료 감면규정, 옥내누수 감면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법적 타당성이나 내용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그동안 상수도공사 시행에 있어 비용발생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금은 조례규정 없이 98년도에 「과주시택지개발 및 공동주택건설운영지침」을 발령하여 주택공사·토지공사 사업자 등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금년에도 188억 5,0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량사용 신축건물에 중수도 설치·운영이 의무화 예정에 있어 중수도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수도요금 감면과 시설자금 융자지원 근거마련을 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97년도에 중수도 시설 설치관리 조례를 개정해놓고도 현재까지 중수도 시설의 설치가 전무한 상태에 있음

- 그리고 옥내누수에 대한 요금을 전액 수용가가 부담하고 있으나 누진 요금제에 따른 요금과다 발생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누수된 달의 사용량에서 해당 월분을 제외한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양을 누수량으로 하여 누수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은 노후관이나 동절기 한파 등으로 누수 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